3-2> 검 · 경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현재 최일선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경찰이 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관련 처리는 "사건 발생 시 강제출국 조치"(출입국관리국으로 이월)일 뿐이다. 형사상의 가해자에게 공정한 수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피해자인 경우에도 언어문제와 인도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그 처우가 부당한 경우가 많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 아래 수사를 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재량권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며 기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① 불법체류자에 대한 책임기피(무조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양도)등으로 민생치안 외면

; [사례 1] 99년 10월, 남양주 경찰서 관내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가 한국인에 의해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여덟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로 진단을 내며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신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출국된다(사건을 접수하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신원을 법무부로 통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피해자를 출입국관리소에 넘기기 전까지 파출소에서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남양주는 공장단지가 많아 불법체류자도 많고 한국인에 의한 폭력이 빈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서의 안일한 형사사건 처리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간접적 협박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을 폭력 등 사회범죄에 더욱 무방비로 그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다른 경찰관서도 이와 크게 틀리지 않는다.

[사례 2] 2000년 2월, 몽골인 A씨가 상처를 입은 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채 부평 경찰서에 들어왔다. 부평서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들어 인천 출입국관리소로 연락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선 환자를 우선 병원에 옮길 것을 권유하며 무조건 출입국관리소로 넘기는 것은 A씨의 상태상 무리라며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부평서는 경찰규정에 관련 사항이 없고 책임질 수 없다며 강제로 이송함. 결국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찾은 후 출국시킴. 경찰에서는 A씨의 상처와 정신적 불안상태에 대한 어떠한 진상조사도 없었음.

②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 검찰의 기소기피

; [사례 3] 2000년 5월 13일, 베트남인 여성 H씨가 전에 일하던 공장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였을 때 사장이 이를 거절하며 구타를 하였다. 이를 방어하던

중 사장의 목과 옷의 일부가 찢어졌는데 사장이 파출서에 신고를 하였다. H씨는 구타로 인해 의식을 거의 잃었고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4일 이른 아침에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로 출석하였다. 당시에 H씨가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거의 말을 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경찰은 가까운 '마석 샬롬의 집'에 통역을 요청하였다. 샬롬의 집에서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와 상담실장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H씨의 상태가 심각하여 추방문제나 조서를 꾸미는 것에 대한 취조를 일시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묵살하고 계속 조서를 작성하였다. 조서 작성을 마치자 담당 경찰은 샬롬의 집 상담실장의 청을 받아들여 병원으로 옮겼고 H씨는 입원하던 중 아픈 몸을 이끌고 강제출국을 피해 병원에서 도망하였다. 남양주서는 H씨의 도망에 대하여 샬롬의 집 관계자에게 신변을 책임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으며 항의하고 있다. 현재 H씨는 월급도 못 받고 사장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도 항변도 못한 채 경찰을 피해 어딘가 숨어있다.

[사례 4] 네팔인 딜립씨는 한국에 온 7년 만인 2000년 2월 19일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 사망하였다. 경북대병원에서 부검한 결과 심장마비로 판명 났고 시신은 본국으로 송화되었다. 본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회사 사장이 딜립씨 사망에 대한 책임 없음(과로사 등의 혐의에 대해)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함께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네팔인 친구 2명을 참고인으로 데려갔는데, 대구 달서 경찰서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 하여 출입국관리소로 인도하였고 이들은 참고인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또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요청도 묵살당한 채 5일만에 출국되었다. 사장의 말로는 평소 잘 알던 김 모 형사에게 조사에 대한 문의를 하던 중 참고인 조사만 받을 뿐 괜찮으니 데려오라는 말을 믿어서 그들 네팔인 2명을 설득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참고로 네팔 영사관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사관의 협조조차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협조자이자 증인인 자들을 무조건 강제출국 시킨 것은 반인도적이며 불공정한 수사의 증거이다.

– 범죄 피의자에 대한 욕설과 구타, 경찰의 자의적인 일방적 조서 작성(특히 상대가 한국인인 경우)으로 불리한 정황에 처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③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 저열)

; [사례 5] 언론에 잘 알려진 네팔인 찬드라씨 건의 예처럼 언어소통의 문제가 정신박약으로 취급된 경우는 일선 경찰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재의 문제이다. 용인정신병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용인 정신병원 내 행려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처리된 외국인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본인 신분증도 업주가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음) 또한 찬드라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행려자'로 처리한 같은 관할서인 동부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처리 몇 주 후 동부서 명의로 실종자 전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외국인 차별, 제 3세계 출신 외국인에 대한 경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사례 6] 지난 4월 말 경 연천 내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절도 혐의의 몽골인에 대하여 취조 중 경찰이 실탄을 장진하고 룰렛게임을 하여 총알이 격발, 턱을 관통한 사건이다. 물론 책임 경찰은 바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 발생의 원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경찰 공무원의 인간에 대한 경시와 사후 항의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극단적 사례이다.

3-3> 난민의 인권 외면 - 한국은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

; 한국은 현재 UN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국이다. 한국 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한 해동안 10건의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지난 92년 국제난민협정에 가입한 이래 난민지위를 신청한 75명에 대하여 단 한 명도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 및 송환금지"라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 신청 접수부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지난 2000년 3월에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버마(미얀마) 출신 샤린씨가 난민 인정신청을 하자 법무부는 "입국 후 60일 이내에 신청" 규정을 들어 신청 접수를 회피하고 강제출국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는 "본인의 난민 심사 기간에는 출국시키지 말 것"을 당부한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요청조자 외면한 처사였다. 이에 민간단체들이 강력히 하자 결국 2000년 5월에서야 "불법체류자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철회하고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샤린씨가 온전한 개인의 노력과 합리적인 법무부의 심사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3-4> 권리구제의 한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요인-

① 외국인이기 때문에,

→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을 감수하고라도 일반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상담단체의 전격적인 지원을 얻어야 민형사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출국을 유예해주는 출입국관리국의 행정 뒷받침이 없다. (출입국관리국에 의해 연행된 자의 경우 보증금을 내어야만 소송을 위해 출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직접, 간소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불법체류자 또는 연수생(研修生)이기 때문에,

→ 노동자로서 당연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등 제한적인 법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을 소송을 통해 판례로 해결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 또는 출입국관리국에 의해 언제든지 강제출국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법적 구제를 찾아나서기에는 용단이 필요하다.

즉 권리구제에 접근하기 어렵다.

③ 언어소통에서의 난관, 문화적 편견에 때문에,

→ 노동부 노동상담소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마저 제 3세계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전혀 없다. 심지어 영어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권리구제 신청에 대하여 기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 폐해뿐만 아니라 재판시 처럼 전문통역원을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이다. 또한 천박한 인권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반말과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력의 부족과 출신국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당하고 있다.

즉 권리구제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인권침해를 당한다.

4. 국가인권기구 성립 시 활용방안

가. 개인의 인권침해 구제기능에 관하여.

① 문화적 차이 또는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지연, 기피하는 件.

② 조사 시(검경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件.

③ 난민 신청 및 심사에서 부당하게 기각당하는 件.

※ 기존의 검,경,법원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둠.

나. 인권현장 불시시찰 기능에 관하여.

① 외국인보호소 불시시찰 -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복지시설 조사,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 및 일시보호해제 보증금 수입 지출 내역 감사, 수용자와의 면담 등이 병행되어야 함.

② 악덕사업장에 대한 불시시찰(제조업, 건설업, 유흥업 등 모든 사업장) -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③ 이주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또는 기숙사 환경 시찰 - 지자체 또는 기업의 복지환경 제공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

다. 인권실태 조사 기능에 관하여.

① E6 비자(Entertainer Visa)로 입국하여 매매춘 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노동자에 관하여 브로커 업체 현황과 매춘 강요 경로, 송출비용, 여성이주노동자의 분포 및 인권현실 조사.

② 3D업종 산업현장의 실태조사 - 한국인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건강권, 복지권 등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라. 인권법의 제 정책연구 기능에 관하여.

① UN협약 및 ILO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 법제도 비교 보고서 작성.

② 전 국민의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한 정책자료 발간 및 학교 교육에 투영방안 연구.

마. 소송참가 및 의견제시 기능에 관하여.

① 미반환 강제적립금 반환 소송(앞으로 준비가 된다면) ; 이제까지의 모든 연수생이 의무저축한 금액 중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본인들의 반환 소송.

②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하여 보다 문호를 개방할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의견제시.

바. 지침 제정기능에 관하여.

※ 지침보다는 법제도 (신설)개선이 훨씬 효력이 있으므로 특별히 제안할 사항 없음.

사. 국회에 대한 법 제개정 권고기능에 관하여.

①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된다면) 중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한 독소조항 개정 권고 = 노동허가제 신설 권고.

② 불법체류자 범칙금 조항 및 제 84조 제 86조와 같은 행정기관 내 협조(통보 및 신병양도) 의무 조항 삭제 권고.(한국의 외국인력도입 정책의 오류로 양산된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오류를 私人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폐지가 마땅함 / 행정기관 내 협조의 의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을 받음.)

③ 국가에 의한 차별 소지 및 특히 탈북 난민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독소조항인 제 64조의 '국익에 반하거나 해를 끼칠 우려 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을 하지 않도록'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

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관행 개선 권고기능에 관하여.

① 불법체류자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허가 및 중학과정까지의 의무교육 실시토록 교육부에 권고. (현재는 학교장 재량이며 교육부는 자녀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를 들어 소관이 아님을 주장함)

② 국제결혼 가정 및 한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용을 위해 법무부에 거주권(영주권) 비자 신설 및 국제결혼 전담부서 설치 권고.

③ 난민 심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실질적 난민 허용 실적 증대를 법무부에 권고.

④ 불법체류자 중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합법적 체류연장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면정책 도입을 법무부에 권고.

⑤ 정부 발표 국제 보고서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인권위원회가 가지는 동시에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 및 시정 권고.

⑥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출국 중지를 법무부에 권고.

⑦ 회화지도(E-2) 비자에 대한 내용 중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

⑧ 지자체 별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실시를 권고.

자. 인권교육 기능에 관하여.

① 일선 경찰, 노동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직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권소양 교육 실시.

② 인권침해 빈발 사업장 대표 및 관리직 직원에 대한 소집 교육 실시.

③ 인권침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 인권의식,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 인권위원회가 각 인권 자료를 발간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일을 직접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차. 기타 인권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기능

;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의 특히, 가, 나, 다, 마 항에 대하여서는 화해조정, 수사의뢰, 고발 뿐 만 아니라 시정권고권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 검사 도입 요청권이나 특별 기소권 등도 필요하다.

5. 공대위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

가. 인권위원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① 제 5조 [인권위원의 임명] 대통령이 5인을 국회가 6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 정부 및 여당의 영향력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구성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3인, 국회가 8인 또는 2:8로 임명토록 한다. 그러므로 제 6조 2항을 재구성한다.
- 위원의 임명에 있어 법조인 30%, 학술인 20%, 민간단체 전문가 50%과 같이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다만, 이번 대법관 임명에 있어 강신욱을 저지시켜 내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민간단체가 생각하는 비적격적자를 배제할 수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 민간단체 추천을 넣자는 고려에 대하여 ; 민간단체가 인권위원회와 보다 자유

로운 연계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선정 및 임용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제 9조 [신분보장] 중에서

- 불성실한 위원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및 상임(소)위원회 불출석 횟수 또는 각 위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해태 등을 이유로 부실한 활동을 하는 위원을 면직하고 생동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제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권한이 실효성에 대하여

제 38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 등] 중에서,

특히 제 5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각하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바로 자체조사와 징계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사실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6월에 안산 경찰서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은 한 중국인 여성과 그의 친구 3인이 불법연행되었고 성고문과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는 여러명의 경찰관에 의해서 경찰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 사실이 바로 언론에 알려지고 인권단체들이 항의를 하자 고문사실을 부인하던 안산경찰서는 자체조사에 착수하였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또, 위에 서술한 바 경찰에 의한 몽골인 피격도 마찬가지로 해당 경찰관의 징계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은 현재대로라면 자체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제 124조, 제 125조에 의하여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받는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개인에 대한 징계선에서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말할 나위도 없이 민간인들은 경찰(피의자)에 대한 사실조사나 기소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당한 수사에 대한 감시나 촉구를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사는지에 대하여서도 알기 어렵다.

인권위원회의 생명은 실효성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제 5조 2항에서 진행 중인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인권위원회의 사실적 실효성을 더욱 퇴색시켰다.

다. 끝으로 인권위원회는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는 동시에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기구여야 한다.

; 특히 법무부와 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권위가 존중받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국가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데, 사무처에서 지방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인력과 직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정인에게 "가장 문턱이 낮고, 가장 문이 넓도록" 하기 위하여 제 18조에 서울 외 5대 광역시에 필수적으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5~15

▷Ⅲ분과 · 5일(17:00~17:50)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 인권침해 조사

조 용 환 (변호사)

1. 과거청산의 쟁점

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1)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난다.

(2)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3) 화해와 제도개혁, 역사반복의 예방 가능성

(4) 피해자를 위한 치료과정

(5) 화해의 조건 및 가해자의 치료문제

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 칠레,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 disappearances

-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에 집중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상황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한 sense of impunity만연 가능

(2) 남아프리카 - severe ill treatment 광범위하게 해석

(3) 엘살바도르 - "사회에 대한 영향이 커서 공중이 그에 대하여 진실을 알 필요가 시급한 serious acts of violence"

(4) International Fact-Finding Commission by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 crime of genocide, serious violations of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both international and internal armed conflicts,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s, extra-legal executions and act of torture

(5) 한국의 경우:

- 광주, 거창사건, 제주 4.3, 의문사 등 조사, 민주화운동유공자 보상
- 대상, 조사범위, 목적, 피해자의 권리, 국가의 의무 등 제반 문제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일관성 부재.
- 법률의 내용들이 국제인권법의 일반적 원칙에 크게 미달하고 법 자체의 논리적 완성도가 크게 떨어짐.
-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과거 정권의 고문, 장기간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 삼청교육대, 언론인 불법해직, 방송 등 재산권 박탈, ...

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1) remember in a contextual, creative and official way

(2) remember in a diverse and representative way

(3) remember in a legitimizing way

(4) remember in a complex way

- 인권침해를 일으킨 과거의 분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을 알아야
- 특정 형태의 인권침해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실종과 살인 등이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억압적인 체제아래서 감시와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설명할 수 없고 여성들의 특수한 고통들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 분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드시 구별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 remember in a forward looking way

-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필요. 인권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

라. 과거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 고려할 점

(1) 승계정권아래서 truth-telling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조건들

(2) 집단적인 정체성, national self-image, 정치문화가 과거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negotiated, reworked, reconstructed되는 모습

마. 법적, 현실적 쟁점들

(1) 과거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2) 국가의 의무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가.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는가

- 정부가 과거범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권력이 없는 경우, 정부는 전복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범죄자의 처벌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의 판단은 누가 하는가.

(4) 과거 인권침해 처리에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량의 한계는 무엇인가

(5) 과거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러나 한계를 가진 신정부에 대하여 인권단체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2. 과거청산의 목표와 규범적 문제들

가. 과거청산의 일반적 목표

(1) 과거의 역사를 공적으로 확인, 설명

(2) 피해자 지원과 국민적 화해,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개인과 집단의 재활문제

(3) 인권보호 및 과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구조적 개혁

(4) 인권침해자를 확인, 책임추궁

나. 문제점

(1) 목표들 사이의 중복 및 상호간의 모순. 충돌

(2) 국가적 차원에서는 backward-looking과 forward-looking의 두 측면을 결합하여야 하며 민주적 개혁을 통하여 인권을 유린한 국가기구와 관료들의 성격을 바꾸고 민주적 국가제도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과거범죄의 양상 및 이행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역관계에 따라서 과거청산의 목표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라마다 국제법적인 의무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창조적인 대처방식을 개발해야 함

(4) 과거문제를 다루는 데는 목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방법론과 제도가 필요. 단순한 과거범죄의 처벌 차원에서만 다루거나 하나의 기구를 통하여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며 일반적으로 과거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한 쪽에, 전면적인 사면을 다른 한쪽에 놓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

(1) 일반적으로 국가는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정부는 "국가의 범죄"로 벌어진 인권유린의 사실을 확인하여 공적으로 알리고 국가의 역사에 편입할 의무는 피할 수 없다.

(2) 정책의 정당성 요건

i) 진실의 완전한 공개 및 공적인 인정

- 공적으로 확인된 국가의 역사를 구성, 파당적인 고려를 넘어 권위있는 진상 확인

- 중대한 인권침해 조사/ 피해자 생사확인 위해 덜 중요한 인권침해조사 희생 가능

- 진실은폐를 전제로 한 보상 불가능

ii) 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함

iii) 국제법에 정한 인권의 원칙을 침해하지 말 것

(3) 방법론의 다양성

i) reparative measures -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

ii) preventive measures other than punishment or clemency

- 국가적 화해와 재발방지 목적의 충돌가능성 (처벌에 의한 예방/ 관용에 의한 예방)

- 인권보호를 위한 법체제의 강화

- 국가기구 개혁 (사법부, 정보기관 개혁, 감독)

- 특정 이념과 이론의 폐기

- 인권교육

iii) punishment

iv) clemency/ amnesty

v) 어느 하나의 방법론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최근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진실위원회(TRC) 방식 역시 과거청산을 위한 여러 장

치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 남아프리카의 경우, TRC, HRC, Gender Commission, Land Claims Court, Youth Commission, 교육체제의 개혁, 재건 및 개발계획들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기억할 것.

(4) 과거 인권침해 범죄를 다루는 국가의 재량에 대한 한계

i) limits to punishment

ii) limits to clemency - 특정한 범죄/ 진실발견 포기/ 과거정권에 의한 자기사면

iii) superior orders/ due obedience

3. 과거청산의 형태와 결정요인

가. 과거 인권침해와 체제의 성격

(1) 군사정권

(2) 인종차별정권

(3) 공산정권

(4) 기타 (민간독재정권 등)

(5) 내전 - 반란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나. 인권침해 기간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1) 남미 - 민주정치의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군사정권의 집중적인 인권침해, 정권과 사회의 광범위한 이반현상

(2) 소련 등 공산권 - 민주정치의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전체주의 통치, 사회와 문화 전체가 체제에 동화. 정부와 사적 영역을 재건설하는 문제가 대두됨.

(3) 남아프리카 - 장기간에 걸친 인종차별체제, 인종간 갈등의 양상

다. 인권침해의 주된 양상

(1) 극단적으로 집중적이고 잔혹한 인권침해(아르헨티나, 칠레의 대규모 실종)

(2) 이념적인 광범위한 지배체제

(3) 인종차별 체제

(4) 효율적인 국가관료체제를 기반으로 한 이념적, 사법적 지배와 상대적으

로 소수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라. 인권침해의 이념적 기반
(1) 국가안보, 좌익혁명봉쇄
(2) 인종차별
(3) 공산주의 이념
(4) 분리운동진압

마. 민주화 이행의 원인과 양상

(1) 구정권의 국내적 권력 상실(내전 패배) - 니카라구아
(2) 구정권의 국내적 권력 상실(체제유지 능력 상실, 경제파탄) - 동구
(3) 국내적 권력 유지, 기타 원인(전쟁패배, 경제파탄) - 아르헨, 남미
(4) 국내적 권력 유지, 신정권과 협상 - 남아프리카
(5) 민중봉기 - 필리핀
(6) 내전종결 협상 - 중미
(7) 적국에 의한 점령 - 이차대전 추축국, Nurenberg, Tokyo 전범재판
(8) 국제사회의 강제적 개입 - 구 유고슬라비아, 루완다

바. 이행기의 사회적 역관계/ 구정권 세력의 태도/ 신정권과 구정권의 관계

(1) 정치적 제약요인이 없는 상황 - 이차대전 후 전범재판
(2) 구세력이 정당성은 잃었으나 무력을 장악한 상황-그리스74, 아르헨 83
(3) 군부가 협상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민간정부 수립을 허용한 상황 - 칠레
(4) 점진적인 이행과 대중적인 용서
(5) 해결되지 않은 무력투쟁의 결과 신정부가 연합세력인 경우 - (엘살바도르?)
(6) 인종, 민족, 종교갈등이 있는 경우
(7) 인권침해의 규모, 효율적인 검찰, 사법제도의 존재 여부, 경제적 자원

사. 국제사회의 대응

아. 구정권 범죄의 처리양상

(1) 처벌 + 진상조사 - 그리스,
(2) 처벌 + 사면 + 진상조사 - 아르헨

(3) 일방적 불처벌 + 진상조사 + 제한적 처벌시도 - 칠레
(4) 국민투표에 의한 불처벌 승인 + 진상조사 - 우루과이
(5) 진상조사 + 제한적 사면(처벌) - 남아공
(6) 진상조사 -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처벌문제 미해결)
(7) 진상조사 + 사실상 불처벌 - 필리핀
(8) 비사법적 인적 청산 - 동유럽
(9) 국제재판 + 국내재판 -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을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 방향

가. 전제

(1)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을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법적 평가
- 인도법을 포함한 인권침해 당시의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함. 그 책임의 내용은 국제인권법 원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2) 피해자 (당사자와 유가족, 생존자)의 인권문제
- 학살과 인권침해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인권 및 국가의 책임
- 진상을 은폐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의 진상조사 노력을 탄압한 데서 생기는 인권 및 국가의 책임

(3) 대한민국과 미국 및/또는 유엔의 법적 책임은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며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과거 인권침해 조사의 목적

다. 고려할 문제들

(1) 문제의 성격 - 사건에 따라 적어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만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와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과 같이 미국 및 유엔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2) 상황의 문제 - 양민학살의 경우 전쟁과정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쟁법의 원칙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반면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인권침해도 있다.

(3) 규모의 문제 -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수립부터 한국 전쟁기간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간,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규모가 거대함.

(4) 단편적인 해결의 시도가 존재 - 광주, 제주 4.3, 거창사건, 의문사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결을 시도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유공자 보상법 등이 제정. 이들 법 자체, 그들 상호간, 그리고 남아 있는 문제들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복잡다단하여 해결에 난점을 제기. 특히 기존에 입법이 시도된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나머지 문제들을 범주별로 나누어 해결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인 해결을 시도할 것인가, 혹은 기존의 입법을 통폐합한 종합적인 해결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

(5) 정치. 사회적 갈등과 대립 문제

(6) 증거의 조사와 확보문제

(7) 조사 및 조사 이후의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역량의 문제

(8) 조사와 처리가 필요한 인권침해의 내용적, 시기적 범위 설정 문제

- 한국 전쟁 전후부터 조사할 것인가? 양민학살과 고문, 삼청교육대, 광주, 언론인해직 등 어느 범주에서 조사대상을 정할 것인가

(9)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 문제와 해결의 방법 - 진상조사 후 이를 토대로 한 해결책 모색이 논리적으로 올바르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였고 또한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상조사와 잠정적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최종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방식

라. 해결방향

(1) 한국 정부의 입법을 통한 진실발견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국가의 의무이행.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내적 진상조사를 국제적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2)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인권유린의 완전한 진실 조사와 공개. 진실의 조사와 공개를 전제로 한 해결을 모색해야 함.

(3) 진실조사는 정부나 국회보다는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조사가 바람직함.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가의 최종적 의무 이행 및 국제적 해결을 지향하는 추가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야 함.

(4) 군부를 비롯한 기존 관료기구의 비협조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권위와 권한:

- 국가인권위원회에 필요한 일반적 지위와 권한의 원칙을 적용하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정도 민주화된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 비하여 과거 인권침해는 국가권력 자체가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진상을 은폐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조사권과 특권 필요함.

(5) 논리적으로는 진실조사를 토대로 그 이후 국가의 의무이행을 추구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열악한 건강 및 경제적 상황, 잠정적으로 밝혀진 진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기구의 재량으로 잠정적인 형태의 보상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6)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다만, 그 범죄성을 명백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통해 심리적 치료가 확보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가해자 집단의 치유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함.

(6) 재발방지 및 민주적 제도 수립을 위한 장기적 논의의 기초 마련

(7) 기구의 형식

- 독립된 과거청산기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과거청산 기능을 맡게 할 것인가

- 독립된 과거청산기구를 만들 경우 청산대상인 인권침해의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의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된 하나의 기구가 모두 다 조사하게 할 것인가

- 새로 설치되는 기구와 특히 조사범위가 중복되는 기존의 과거청산 기구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고려할 사항: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기존에 설치된 기구 및 관련자들의 물질적, 심리적 이해관계; 국가기구 설치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의 문제; 입법절차의 효율성 ...

마.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

- 관련조항: "第32條(委員會의 調査對象) ① 다음 各號의 경우에 人權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被害者"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委員會에 그 내용을 陳情할 수 있다.

1. 政府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憲法 第10條 내지 第22條, 第24條 내지 第28條 또는 市民的·政治的權利에관한國際規約에 정한 人權을 침해당한 경우 ...

. ③ 委員會는 第1項의 陳情이 없는 경우에도 人權侵害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職權으로 調査할 수 있다.

第34條(陳情의 却下 등) ① 委員會는 접수한 陳情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

4. 陳情原因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年이상 경과하여 陳情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인권위원회의 위상, 조사권 제한

(2) 과거청산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3) 과거 인권유린을 본질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피해자의 개별적인 진정과 그에 대한 조사여부 결정 (과거 대규모,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절차로 부적당), 인권침해가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행위인 것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 과거청산을 위한 전문성있는 조직구상의 결여

(4) 이 조직으로는 과거청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앞으로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인권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법적 형식상,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는 기구로 설정될 것이므로 과거청산기구는 인권위원회의 법적 혹은 사실적 지도와 영향을 받는 형식이 될 것임. 따라서 과거청산 기능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하든, 다른 기구에 부여하든, 인권위원회를 강력한 권위, 조사권한을 가지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89~109

▷ I 분과 · 5일(19:00~19:50)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인권침해의 현실과 국가인권기구의 활용가능성

박 찬 운*

1. 형사피의자 인권상황 개관

(1)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형사피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낸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어 거리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와 같은 구금장소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이제, 국민의 정부. 과거의 독재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현재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철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어서도 이 분야의 인권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집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과 항의는 만만치 않을 실정이다. 또한 고문의 의혹도 만만치 않다. 과거의 전기고문, 물고문은 사라졌을

*필자는 변호사이며 현재 민변 국제연대위원장으로 일한다. 미국 노틀담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LL.M)을 마쳤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전범재판소에서 리서처로 일하였다. 시립대와 서경대에서 국제법등을 강의하였으며 올 8월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법을 강의하고 있다.

지 모르지만 수사절차상 피의자들에 대하여 잠을 재우지 않는 밤샘수사나 폭행, 협박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1)]

(2)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많은 인권침해가 있으므로 인신을 구속하는 절차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막는 가장 전형적 방법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변화는 95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종전에는 구속영장발부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 못하고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발부하였는데 이제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다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97년 이제도가 도입되자 구속영장발부율은 현격히 감소하였고, 그 여파로 한때 구속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후 수사기관(특히 검찰)의 반발로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개악되었고 법원이 여전히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협조하는 종래의 일반적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관계로 무분별한 구속수사는 아직도 많이 발견된다. 또한 이 제도는 뒤에서 보는 바대로 아직도 구속의 필요적 절차가 아니므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라도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면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줄일 수 있다. 종래, 우리는 피의자의 석방과 관련하여 구속적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제도가 우리의 구속남발을 저지하는 제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95년의 형소법 개정으로 기소전 보석제도가 채택되어 구속피의자에게도 보석의 길은 열렸으나 아직 이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아무래도 변호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변호인이 수시로 접견하고, 나아가 조사시에 참여할 수 있다면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 이분야에서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대로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사법부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증거법에 반영하는 일련의 긍정적 조치는 취해졌지만 제도적으로 발전된 것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아직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는 입법화되지 않았고(물론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국선변호는 가능하지만)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시 참여권은 요원하다. 더욱 아직도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을 막는 일이 종종 일어나며 이런 일은 강력사건이나 시국공안사건에서 두드러진다.

1) 대한변협, 1998년도 인권보고서, 64쪽 이하 참고

(3)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중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 경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부분을 불기소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무산시켰다.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간간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고는 있지만 인권유린사건 대부분은 법원에서도 적절히 구제되지 못한다. 아직도 위법수집증거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고문의혹이 제기되었다해도 그것이 적절히 규명되는 일은 대단히 적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인권기구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수사과정에서의 각종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피해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동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상황이고, 기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도 몇차례 주요한 결정을 한 바 있어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다.

(4) 지난 10년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인권단체에 의해 무수히 전개되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93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당직변호사제도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 한통화로 그 날의 변호사회 당직변호사가 무료의 접견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약 6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제도로 도움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제도를 기소전 단계의 국선변호로 승화시키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여년간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활동의 일환으로 민변의 변호사들이 활용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제도이었다. 수사기관에서 구금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민변의 변호사들은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을 때 준항고는 변호인과 피의자측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었다. 또한 민변은 변호활동과 함께 제도개혁을 위해 인권관련 법령(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행형법등)의 개선안을 수회에 걸쳐 내어 놓았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평을 국제연대활동으로 승화시켰다. 형사피의자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조약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제네바에서 열릴 때 반박보고서와 함께 로비활동을 벌려 이들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의 단축,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참여, 필요적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등등).

법률가단체가 아닌 인권단체들의 활약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매일팩스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을 발행하여 인권침해의 상황을 일일상보하였고, 특정의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켐페인을 벌려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예컨대, 98년도에 있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켐페인은 종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국민들로 하여금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깨닫게 하였고 급기야는 적법한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만들었다.

(5) 해방 이후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보장장치간의 유기적 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그리고 인권단체가 각자 별개로 작동하며 피의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국가의 각기관을 전체적으로 어우르면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구제하고 나아가 연구하는 총합적인 인권기구가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인권관련 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종래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구제되지 못하였던 구체적인 인권침해사건의 해결 및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인권보장 총합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그 의의가 크다.

2. 형사피의자를 둘러싼 인권침해의 유형

이하에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말의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침해는 형사피의자들이 헌법상 혹은 국제인권법상[2] 누려야할 각종의 권리(예컨대, 자의적인 체포구금의 금지, 고문

2) 국제인권법이란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예컨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인권조약이 고문방지조약등과 같은 성문의 국제조약과 국제사회에서 국제관습으로 널리 인정되어 있는

으로부터의 해방,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를 받을 권리 등등)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침해는 보통 두 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법령 등을 만들어 제도적 혹은 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령 자체는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법집행자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법집행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사피의자를 둘러싼 인권침해의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1)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혹은 범죄혐의자를 그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3]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4]에 의한 불심검문시의 임의동행이 법상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상의 임의동행은 모두 당해인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임의동행이란 이름 하에 강제연행되고 있는 사례[5]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긴급체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신체포(구금)가 긴급체포-영장청구의 수순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임의동행이란 미명하에 일단 피의자를 경찰관서로 강제연행한 다음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임의동행의 폐해는 실질적인 강제연행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인신체포의 절차[6]가 준수되지 않으며 긴급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전의 실질적인 구금이 구금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구금기간이 불법적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의동행과 이에 이은 신체의 자유의 제약 그리고 이로 인한 구속기간의 장기화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모두 금지되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불법체포감금죄등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통칭한다.

3)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4) 거동 이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될 때 부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당해인이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많은 경우,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까지 같이 가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비추어도 위법임이 명백하다. 동법은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경찰관임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4항).

6) 예컨대, 영장제시, 범죄사실의 고지, 변호인조력권의 설명 등등.

(2) 불심검문 및 소지품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임의동행과 함께 불심검문도 왕왕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인 바, 이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조항(제17조의10)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및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조항(제43조1항)도 불심검문의 근거규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심검문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심검문을 통하여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근거규정(제3조제3항)이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는 법상 어디에도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의 한 태양이고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흉기소지 여부를 그냥 말로만 물어본다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를 위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선진외국에서조차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대상 시민의 저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아닌 간단한 외피조사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7]

그러나 불심검문은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아니기 때문에[8] 그 절차나 내용은 수사와 엄격히 구별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심문대상인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질문이 강요될 수 없고, 더욱이 그의 소지품이나 신체에 대한 검사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왕왕 버스터미널이나 역, 지하철의 입구 혹은 시위현장부

7) 미국에서는 1968년의 Terry 사건을 통하여 Stop and Frisk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8) 학자들은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 그 중에서도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불의의 정지를 당하고 무조건 신분증과 소지품검사를 당하기도 한다. 만일 이에 불응이라도 하려하면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 혹은 경찰차량으로 연행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임의동행과 더불어 경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인권침해상황이다. 불심검문은 임의동행에 앞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이고, 임의동행은 그 후 벌어지는 연속적 인권침해인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경우는 불심검문이 파렴치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불심검문이나 소지품검사는 일단 실시하게 되면 일정한 정도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법도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라고 규정(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소지품검사를 하는 것은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상으로도 소지품검사는 위와 같은 불심검문의 요건 이외에도 흉기의 소지 여부가 의심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두 불법의 불심검문 및 소지품검사라고 할 수 있다.[9]

첫째,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소지품검사를 실시함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불심검문, 소지품검사는 위법한 직무수행이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의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혹은 옷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위법이다.

셋째,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온도서 등 표현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직무수행이다.

(3) 법관에 의한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

우리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은 누구라도 체포되면 지체없이 법관의 면전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서구제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도화된 것이며 '지체없이'라는 말은 보통 24-48시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강제수사의 초기부터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9)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알기 쉬운 인권지침(1993, 녹두), 57쪽

지난 10년간 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이러한 피의자의 법관에의 인치제도를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의 인신구속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발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다. 따라서 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영장발부율도 비교적 높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제201조의1)함으로써 판사의 임의적 피의자신문제도를 두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구속영장의 발부건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검찰에 의한 강력한 반발로 시행 1년이 안되어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재개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재개정의 핵심은 판사의 임의적피의자심문을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피의자심문제도(그것도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됨)는 위에서 본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견해이다.[10]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9년 제2차 정부보고서검토회의시 한국의 임의적영장실질심사제도가 규약 제9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 비판의 요지는 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의 취지는 모든 피체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제도가 필요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기소 때까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기소 때까지 최장 30일간(국가보안법의 경우 50일)의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국제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긴 기간이다. 구금절차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장기간은 23일에 불과하다.[11] 한국의 이러한 구금기간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이미 고문금지조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검토회의(1996년)와 자유권규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검토회의(1999년)의 결과로서 각각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서 명백히 지적된 바 있다.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법영사, 1999), 49쪽 이하 참고
11) 일본의 경우는 대용감옥과 더불어 23일간의 구금기간이 피의자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비판되고 있다.

수사기간 중의 장기간의 구금은 뒤에서 보는 구금장소와 변호인접견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일간 안기부의 지하실에서 외부와 절단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사실과 관계없이 수사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구금장소가 수사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있는 상황이 수십일 지속되는 것은 구속피의자 99%가 수사기간 중 자백하고, 그 99%가 법원에서 유죄가 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5) 피의자의 구금장소

대부분의 선진국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단기간(일반적으로 24-48시간) 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한 다음 법관 면전에 인치하고 이어 계속적인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구치소에 구금한다.[12] 즉, 체포 이후 최단기간 내에 피구금자의 구금장소를 수사기관이 아닌 장소로 옮겨 구금을 이용한 수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적 시각에서 보아도 이러한 제도는 이미 관습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의 피구금자보호원칙 21조제1항도 "자백 혹은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기 위해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관행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 선진국과 국제인권의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10일간 구금될 수 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원칙적으로는 구치소로 구금장소가 옮겨지지만 검사는 수사를 이유로 언제든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사실상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아닌 구치소로 옮긴 목적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더욱, 국가보안법의 사건의 경우는 구속영장상 구금장소가 안기부 근처의 경찰서로 되어 있고 실상은 피의자가 20일간 안기부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어 영장주의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접견권을 방해하고 있다.[13]

12)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1988년에 주요국가를 15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란드, 독일, 인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루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타이, 코트디브와르, 미국)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타이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체포로부터 48시간 내외로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하고 그 이후에도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경우에는 경찰 관할권 밖의 구치소에 구금한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동경3변호사회대용감옥조사위원회, 외국에 있어 피의자의 구금장소(1988. 3) 참고.
13) 서울지방법원 1996. 5. 15.선고 95모94(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결정에대한준항고)사건에서는 이미 이러한 임의적 구금장소의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용감방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용감방은 검찰청과 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구치소나 교도소가 없는 경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통상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의 유치장에 계속 구금하는 경우를 말한다.[14] 법률상으로는 이런 경우라도 행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관리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경찰청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이 대용감방의 근거규범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된 이후 적어도 한달 이상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미결수로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찰서의 유치장은 구치소에 비하여 시설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할 수 밖에 없어 대용감방에서의 계속적인 구금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가 되기 쉽다.

(6) 긴급체포의 남용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예전의 임의동행-조사후 영장청구 등과 같은 방법의 인신구속은 상당히 사라졌다. 반면에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우선 피의자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체포한 다음 48시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문제다.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48시간 동안 법관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긴급체포제도가 긴급체포 후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15]

(7) 피의자조사방법의 문제

피의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나 국제인권법 어디에서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백을 강요하는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제국은 대체로 두 가지의 방법을 확립하고 있다.[16] 첫째는 자백이 이를 강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폭행 및 협박 등이 사용된 경우)에서 이루어진 경우(즉,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이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룰이나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수사관의 수사방법을

14) 필자가 1995년에 조사한 바로는 당시 전국에는 17개의 대용감방이 있고, 1일 약 2,000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15) 황정근, 상게서, 357쪽 참고

16) 이에 대해서는 박찬운, 국제인권수준과 한국의 수사절차, 대용감옥의 폐지와 형사사법개혁에의 제언(명석서점, 1995), 166쪽 이하 참고. 이글은 필자가 1995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국제법률가협회(IBA)가 공동주체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일본어로 출판되었다.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자백강요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상의 '경찰의 신병구속 및 처우와 조사에 관한 실무규범(Code of Practice for the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risoners)' 제12조는 조사의 시간에 대하여 '24시간 중 적어도 야간 8시간의 연속적인 휴식'과 '식사시간에의 조사금지' 그리고 '두 시간마다의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수사방법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이를 시정하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사건일지라도 이것이 법원에 의해 현실적으로 적절히 통제(즉,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되는 것 같지 않고[17] 더욱 수사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리적인 고문은 받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야간철야수사가 성행하고 있고 장시간 무리한 조사가 진행되어도 특별히 이를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8) 피의자에 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피의자가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헌법(제12조제4항)과 우리가 가입한 자유권조약(제14조제3항) 및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93조)등은 이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와 현실은 아직 이런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18] 여전히 변호인의 접견권 자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에서는 아직도 변호인의 접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의 접견권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국제인권법(혹은 국제인권기준)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단계에서도 무료의 변호원조(국선변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헌법제12조4항, 형소법 제33조 및 283조)이 모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

17)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자백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참고.

18)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박승옥,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I(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제18번째 논문을 참고

로 공소제기 이전에는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19]

둘째, 각종의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권이나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은 1996년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의 정부보고서가 검토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그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20] 최근 경찰청이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겠다고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지침에 의한다하더라도 경찰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상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우리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해석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접견 및 교통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1992년 이전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도관이 입회하는 등 본질적으로 접견의 비밀을 침해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1992. 1. 21. 91헌마111)으로 그러한 입회가 위헌으로 확인되었고 이어 1995년의 행형법 개정으로 완전한 비밀접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수사기관(경찰서)이 변호인접견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수사관의 가청거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접견의 비밀은 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한편, 변호인과의 피의자간의 서신교환에 있어서도 여전히 허가와 검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비밀교통은 침해되고 있다.[21]

넷째,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공판전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가질 권리"에는 바로 이러한 접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22]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공판전 증거개시제도를 가지고 있다.[23]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9) 단지 예외로서는 구속적부심을 하는 과정에서는 법관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20)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Republic of Korea, UN Doc. A/52/44, para.68.

21) 헌법재판소는 1995년 교도소가 서신이 당사자가 변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하거나 도주, 증거인멸,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변호인과 미결구금자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충분한 접견교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95. 7. 21. 92헌마144.

22) 변호사의역할에관한기본원칙 21조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문서에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비록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변호인의 접견권에 관한 인권조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고 있다.

수사기록에 대하여 수사기간 중 피의자의 방어를 위하여 원칙적, 일반적으로 열람등사를 보장하는 법령이나 실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기록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을 뿐이다(형소법 제35조). 물론,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기소이후 공판 전에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997. 11. 27. 94헌마60).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는 변호인이 증거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 형사피의자의 인권침해구제방법과 그 한계

위에서 필자는 수사단계에서 형사피의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각종의 인권침해를 열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의 우리 법제도하에서는 어떠한 구제가 가능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하의 주제이다.

(1) 준항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 측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법원에 제기하는 준항고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거부되는 경우, 피의자의 수진권이 침해되는 경우[24], 구속피의자의 구금장소가 임의로 변경하는 처분

23) 예컨대, 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a)(1)(A)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자신이 소지, 관리 또는 지배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서면, 진술을 녹음한 것, 촬영한 것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4)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로 하여금 진료케 할 수 있다. 형소법 제34조.

등에 대하여 준항고를 하고 있고 법원은 입증만 된다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일반에 대하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 요건이 협소하여(구금, 압수 또는 환부에 관한 처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행되는 다양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준항고를 통하여 적절히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준항고는 일반적으로 그 절차가 너무 느려 현실적인 구제책으로서는 미흡하다.

(2) 형사고소, 고발 및 검찰항고

수사기간 중 피의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하거나 고문을 한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접견을 불허한 경우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제124조) 혹은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나아가 직권남용(형법제123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다해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극히 적으며(대체로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검찰청법에 의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법제10조1항) 항고과정에서 원검사의 처분이 번복되는 일은 극히 드문 현실이다.[25]

(3) 재정신청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의자 등은 그 인권침해행위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만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60조1항). 그러나 과거 재정신청제도는 그 대상범죄를 형법상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제도로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하나의 재판제도이므로 시간을 다투는 인권침해사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그 결과 이제까지 이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가 밝혀진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몇 사례에

25) 참고로 97년 10월부터 98년 9월 말까지 사이에 경찰, 안기부, 검찰 등의 폭행, 감금, 고문으로 수사관계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자료에 의하며 모두 348건이 고소, 고발되어 기소 10건, 기소유예 30건, 혐의없음 187건, 공소권없음 1건, 고소장등 각하 38건, 기소중지 4건, 수사 중 30건 등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법제사법위원회).

불과하였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적어도 수사절차에서 수사관이 현행법에 위반하여 위법한 수사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현재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된다거나 위법한 구속절차로 불법구금이 되었던 사람들은 국가(와 책임있는 수사관 개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밀폐된 수사관서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의자측이 원활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완성되므로[26]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5) 법원의 증거능력배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 중의 하나는 법원이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과감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룰을 보더라도 법원의 판례는 수사현실을 현실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우리의 법원은 과거에 비하여 달라지고는 있지만(위법절차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을 부인) 아직도 위법수집증거 일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법정에서 위법수사가 논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가부를 조사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6)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법재판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헌법소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의자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피의자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6)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인권침해를 받은 원인이 위헌적인 법률의 존재 때문이었다면 피의자는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해당법률의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1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없고, 최종적 혹은 보충적인 구제방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피의자에게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긴급한 구제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7)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

현재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내구제절차에서 구제가 안된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가입하면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그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였으므로 인권침해의 당사자는 이 개인통보제도를 통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해야 함으로 긴급한 구제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을 한다해도 여전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몫이므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27]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모니터링시스템인 정기적인 정부인권보고서 검토를 활용하여 인권구제활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정부의 인권보고서가 규약위원회에서 검토될 때 인권단체들이 참가하여 정부의 인권상황을 반박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적극적인 권고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여전히 인권제도개선의 1차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최후적이고도 보충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4.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시 활용방안

이하에서는 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근거하여 향후 공대위안과 같은 국가인권기구법이 통과되어 인권기구가 설립되었을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동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다.

27) 그동안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서 제기한 3건의 개인통보사건에서 신청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절차를 취하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제껏 정부가 이에 따라 구제절차를 이행한 적은 없다.

(1) 개인인권침해구제기능

공대위안이 실현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되고 있는) 피의자는 현실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우선은 임시조치로서 인권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조사절차를 걸쳐 합의, 조정 등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중 대부분이 바로 국가인권기구의 이 기능에 의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

(2) 인권현장조사기능

공대위안은 인권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제27조), 그 이외에도 피해자측으로부터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사항과 관련있는 장소나 시설을 검증할 수 있다(제41조). 이러한 인권기구의 기능은 피의자가 구금시설 등에서 구금되어 있는 중에 일어나는 각종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강력한 억지작용이 될 것이다. 대용감방의 열악한 시설이나 구치소등의 각종의 생활조건 자체가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 인권기구의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는 구금시설 등의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3) 인권실태조사기능

공대위안은 인권기구에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와 권고기능을 주고 있다. 또한 인권기구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연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2조 6호 및 3호). 이들 기능에 의해 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도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해결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각종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방지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인권상황의 일반적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인권기구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4) 인권관련법령의 제개정 권고기능

이 기능은 위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기능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기능이다. 인권상황의 조사에 의해 우리의 각종 인권관련제도가 헌법

과 국제인권법에 상충한다면 당연히 관련법의 제개정을 국회나 관련부처에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만드는 것, 수사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는 것, 공소제기전 구금기간을 단축하는 것, 대용감방을 폐지하는 것,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즉시 사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 등이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인권지침제정기능

공대위안은 인권기구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제시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2조 4호). 이 기능에 의해 인권기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할 수가 있다. 비록 권고적 기능을 갖는다해도 만일 인권기구가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해당기관에 권고한다면 그것의 영향력은 다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법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지침은 그 효과가 클 것이다.

(6) 소송참가 및 의견제시기능

공대위안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인권기구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3조). 이러한 기능은 현재도 국제사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인권단체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권관련 판례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이 기능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접견권과 같은 것은 국제인권법적 견지에서 접근하면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아직 우리의 사법부는 이러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

(7) 인권교육기능

공대위안은 인권기구에 인권교육과 홍보기능을 주고 있다(제22조6호).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인권침해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권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검사, 판사 등 소위 법집행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공대위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공대위안은 필자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본생각과 동일하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을 첨가하고자 한다.

(1) 인권위원임명방법

공대위안은 인권위원의 수를 11명으로 하고 그 임명은 5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4조, 5조). 그러나 이것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지향하는 공대위의 기본이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면 결국 대다수의 위원들이 대통령 사람들이 될텐데, 인권기구는 상황에 따라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과 갈등관계도 예상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럴 경우 대다수의 위원들이 대통령 사람들이라면 결론은 뻔하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편향성을 막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나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같은 방법이 그래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국회, 행정부(대통령),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그 추천의 주체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인권이 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 최종적 판단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시설수용자의 진정

법안 제37조의 시설수용자의 진정에서 초점은 어떻게 하면 시설수용자의 진정이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인권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느냐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다음 두 가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1항 후단("진정서의 작성사실과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은 진정서의 작성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문언은 실제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의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된다. 소속공무원으로서는 만일 수용자가 진정서를 쓴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고, 만일 이러한 것까지를 처벌한다면 과도한 처벌문제가 생길 것이고 현실성도 약해 보인다. 그러나 조문의 문리해석상 이런 상황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서의 내용이 시설의 관리자측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본조문의 취지라면 본 규정을 그저 간단히 "소속공무원은 진정서를 개봉할 수 없으며 진정인에게 그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28]

또한 제37조 4항은 인권위원회가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방문접수의 경우에도 소속공무원이 수용자가 무슨 내용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지를 알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조문에 '방문접수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입회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29]

(3) 임시조치

법안 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진행 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음에도 그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62조2항).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서 임시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을 해도 침해당사자가 합의나 조정에 반대할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같은 내용을 침해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공대위안의 뼈대인데 임시의 조치의 경우는 위원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명령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임시조치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불복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임시의 조치는 자칫 위원회에 사실상의 시정명령권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럴 경우 공대위안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와 타기관간의 위상문제, 시정명령권에 대한 불복절차의 복잡성 및 당사자들의 이해의 충돌 등을 십분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위원회의 임시조치요구규정은 찬성하되, 이의 벌칙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

28)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행형법의 청원에서는 단지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6조 2항.

29) 행형법 제6조 3항은 순회점검공무원에 의한 청원의 접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도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 109~119

▷ II 분과 · 5일(20:00~20:50)

주거권

강경규
참여연대 준비부상

1. 주거권 부분의 인권상황 개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정부, 가난한 민중들, 그리고 빈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올 초 주택보급률이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90%를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90%의 주택보급률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IMF 이후 가난한 주민(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 촌 가주자)들은 여전히 주거로 부터의 고통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거권리가 침해 당하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거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마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빈민운동진영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입법추진위원회을 결성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여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의 주거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거기본법 제정을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2. 주거기본법시안

이 법은 주거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도록 주거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체규정은 두지 아니하며, 기존의 다른 법률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지 아니하고. 이법의 목적은 주택이라는 구조물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이 법의 내용이 주택의 건설, 공급이나 관리에 국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법률이 성언적 사항만 규정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비록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이 선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또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언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단순히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이 법의 형식이 기본법이라고 하여 이 법의 제정이 전시용이거나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에 관한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 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지켜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정책의 기본이념)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생활을 적절한 보호할 수있고, 공간이 적정하며, 구조가 안전하고, 조명·난방·환기·위생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입지가 적정하며, 주변환경이 쾌적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정책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저

소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기준의 설정)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세대구성·성별 등에 따른 주거의 입지, 규모 및 형태 기타 주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주거와 관련된 각종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주거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잇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자금의 지원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매입자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금융제도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주택임차료를 용자 또는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자의 주택매입에 대한 조세감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쾌적한 주거환경의 보호)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해·소음 등으로 타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해·소음 등을 발생시켜 타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사례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동주택관리의 원칙)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입주자 전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이용·관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환경의 개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불량주택, 비위생적인 주거지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공동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거환경의 보호)①각종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인의 보호)①주택의 임차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아니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통하여 주택임차인이 정당한 권익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철거민의 보호)①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주택의 철거는 당해 사업의 시행상 주택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법위 안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기존주택을 철거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자금의 알선·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강제철거를 통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유형 및 사례

강제철거란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강제이주 또는 강제철거를당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주거권(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형별 사례(91년 ~ 2000년)

1. 폭행

폭행은 가장 일상적인 인권유린이다. 철거용역회사가 행하는 폭력은 경찰과 해당 관청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진행된다. 또한 철거용역회사가 동원한 철거깡패들은 쇠파이프, 오함마, 각목 등으로 중무장하여 동원된다. 동원된 철거깡패들은 남녀노소을 가리지않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사례]

양천구 신정동 126번지 신정6-1 재개발지구

- 1991년 9월10일 철거용역 400여 명 쇠파이프, 각목으로 중무장 지역에 난입하여 주민 이정숙(여, 폭행으로 약 6주간 병원입원자료)씨외주민 4명 부상

- 1991년 10월19일 철거용역 수백명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주민 폭행 주민 김분달(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입음)씨외 주민 4명 부상, 폭행과 폭언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부녀자의 옷을 벗기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강제추행(철거용역회사;적준)

관악구 봉천동 산81번지 봉천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 95년 2월16일 철거반원 100여 명 강제철거 및 폭행으로 주민10여 명 부상
- 95년 4월25일 06:20분 경

사무실 2층에서 자고있는 장순자씨(여, 32세)의 방안으로 침입 00년 이리나와라고 하면서 쇠파이프와 망치로 위협,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초교생 자녀 3명을 계단으로 던져버린 후 강제철거, 유리창, 텔레비젼, 냉장고 등 파손(적준)

강북구 미아6동 미아5 재개발지구

- 96년 3월27일 09:00 철거반원50여 명 세대위 사무실 난입 주민 폭행

부녀자, 노약자 폭행으로 주민 3명 부상(서순덕 할머니, 이운숙 부위원장,장수희 홍보부장 김형진 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

- 96년 4월 26일 08:30 현장 소장 나체복 등 철거 50여 명 강제철거 집단폭행

김모씨(41. 노점상) 등 주민 10여 명 부상(5명 입원-전치 3 - 4주, 동서병원 입원 치료)

성동구 응봉동 행당 1-2 재개발지구

- 96년 10월 14일 철거반원 20여 명 오함마, 각목 등으로 무장 2시간 마을 주민 폭행 주민 다수부상
- 97년 4월 8일 철거용역 적준은 행당 1-2지구 소장 임화영 등 철거반원 4명은 과도로 위협 폭행으로 주민2명 부상(허주성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 가격, 목을 조르고 넘어뜨림, 고성규를 밀어 넘어뜨린 후 안면 구타), 주민2명 부상

ㅇ허주성씨(남, 39세): 구강점막열상, 목부위 좌상으로 인해 최소 14일간 입원치료

ㅇ고성규씨(남, 45세): 뇌진탕으로 인해 최소14일 치료

용산구 도원동 4 재개발지구

- 98년 3월 27일~30일 철탑 농성중인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던 주민 2명

폭행, 방화 이범휘씨(남, 61)-의식불명 상태로 갈비뼈 골절과 이로 인한 비장 훼손, 척추와 목뼈골절, 양쪽 팔과 다리가 2,3중 복합골절(전신골절상) 백석호씨(남, 28)-입안으로 화기가 들어가 기도가 타는 등 전신 3도 중화상 → 호상 입은 손가락 5개 이상 절단, 폐렴증세

성북구 정릉4동
- 1999년 6월 8일 08:00 경찰병력 600명, 철거깡패 600명 동원 행정대집행 이과정에서 주민 8명 병원입원

안산 고잔
- 99년 3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사주를 받은 가옥주들이 도끼, 톱 등을 들고 난입 세입자 주민폭행 주민 3명 병원입원,

관악구 봉천3동 봉천7-2 재개발지구
- 2000년 5월8일 철거용역 세대위사무실 난입 쇠파이프, 각목 휘둘러 주민 김진광(남, 42) 갈비뼈 4대 부러져 진단6주, 외 주민3명 병원입원, 용역들 각목 및 쇠파이프 들고 마을순회 공포감 조성, 빈집을 돌며 방화하루에 2~3건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일명: 신앙촌)
- 2000년 8월12일 10:00 철거용역 가옥주대동 주민이 살고있는 집에 포크레인 동원 납입 강제철거, 이번 철거은 범박동 내에서도 가장힘없는 노약자들만 골라 철거, 주민 이연아(여, 51세)위암 수술 후 요양 중, 유용덕(남, 84, 노환으로 투병 중)씨, 윤영천(남, 66세, 중풍으로 투쟁 중)씨 등, 현재 천막생활 중

2.주거침입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그러나 이법조항도 철거지역의 주민들은 만의 나라의 법일뿐이다. 철거깡패들은 주민들이 잠을 자는틈이나, 잠깐자리을 비운사이 집안에 침입하여 집기류 절도나 마구잡이로 망가트림, 또는 아이들만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협박

<<사례>>

성동구 응봉동 행당1-2재개발지구

97년 9월 30일 08:50 경 정보과 형사들과 백골단 300여 명, 철거반원 100여 명, 가옥주가 고용한 500여 명이 극빈 세입자 강제철거(성동구청 주택계량과 직원 동행)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팽개치고 27세대 집을 마구 부수고 어린이 자녀들의 책이나 가재도구까지 땅에 묻히도록 함, 이후 임시 잠자리 마련을 위해 천막을 치려하자 철거반원은 누구든지 천막을 치면 다 목을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최후까지 주거권리 침해. 이후 27세대 110여 명(노약자, 어린이 등)살림도구가 길바닥에 널려진 채 맨땅에서 끼니를 거르며 하루하루 연명

관악구 봉천3동 봉천7-2 재개발지구
99년~2000년 사람이 살고있는 집 대낮에 돌라다녀면 가재도구 마구뒤져며 돌아다녀 주민들 공포 분위기 조장, 또한 사람이 살고있는 집 옆 빈집에 방화 하루에 2~3건 저질러, 또한2000년 5월 8일 철거용역들 김진광씨 집에 난입하여 빨리 이사 가라며 김진광씨 폭행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 마구잡이로 폭행(주민들 항의했다하여 저녁에는 세입자 사무실 난입 김진광씨, 장덕순씨 등 폭행)

3. 성폭력, 성추행

철거현장에서 범죄자들은 여성들의 성적인 수치심을 최대한 자극하여 여성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은 거의 모든현장에서 일어난다. 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추행 행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성폭언이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언을 통해 여성들의 기를 꺾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나체시위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팬티 바람의 덩치 큰 남자들이 여성들 앞을 가로막는다. 뿐만 아니라 아예 철거깡패들은 남자의 성기마저 내놓는다. 여성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게 된다.

셋째, 실제 여성들의 몸에 가해지는 추행이다. 가슴과 음부를 쥐고 비틀어 여성들의 수치심을 최대한으로 자극한다.

넷째, 아예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구타를 가하고, 거기에 음부 같은곳에 집중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다.

<<사례>>

용산구 도원동4 도원재개발지구

- 1997년 6월10일 11:40 철거반원 장공수(철거용역 적준), 김성진 등 7명 철대위 플랭카드 내용을 이유로 시비, 정정남(40, 여)씨 등 부녀자 2인 성추행(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찢은후 가슴을 만지며가슴 참 좋구마 라는 성희롱)

성동구 행당동 1-2 재개발지구

- 1997년 9월30일 08:50경 정보과 형사들과 백골단 300여 명, 철거깡패 100여 명, 등이 세입자 대책위원회 사무실 안에는 아기를 등에 업은 아줌마를 포함해 여자들이 10여 명이 있었다. 이때에 철거깡패 10여 명이 이×같은 년들 전부다 내버려! 저년 옷을 홀딱 벗겨서 망신을 줘라고 소리치면서 달려 들었다. 정신없이 구타당하던 여자들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두손을 꼬아, 한손으로는 옷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자 철거깡패들은 여자들을 엎어 놓고 올라타 머리를 방다닥에 짓이기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야수같은 성폭행을 자행했으며, 여자들의 젖가슴을 움켜쥐고 공을 가지고놀 듯 이놈이 저놈에게 저놈이 이놈에게 돌려가면서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철거깡패4명이 윤모 아주머니의 윗도리를 벗기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작하였다. 이에 저항하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집단으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 하여 실신 지경에 이르자, 개 끌 듯이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아랫도리마저 벗기고 구둣발로 차는 등 반인간적, 반인륜적 작태를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또한 이를 말리는 아주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한 뒤에 음부를 움켜 잡아 뜯는 만행을 저질렀다.

4. 기타

이밖에도 재산손괴, 위협, 협박(야간 행패, 소란행위 포함),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 유린, 방화등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드시 우리정부가 가입한 유엔의 인권조약들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 폭력이 난무하는 철거현장의 모습을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조약과 헌법에서 인권적 관점을 확인하여 보자.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6조), 사람은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류에 의해 허용된 기본권

이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국가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8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자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의 영장을(헌법 제16조)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항목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효과도 전혀 없다.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적 규정만이 아니라, 유엔의 각종 회의에서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50차(1994년) 회의와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1996년)은 주거권이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고, 주거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유엔과 헌법, 그리고 각종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와 권고 등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배하고 있다.

5. 국가인권기구의 성립 시 활용방안

가. 개인인권침해 구제기능 :

·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소지 전입등록 거부사례- 현재 비닐하우스촌에서 거주하는 주 민들이 거주지역 행정기관에 주소지 전입이 거부됨으로 인해 가족과 가족구성원 개 인이 당하는 인권침해

· 각종 개발지역에서의 전.월세 거주세입자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개발사업방식 진행- 재개 발사업은 실제 주민들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 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단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무시당하 고 주민으로서 주권인정이 안되는 부분

나. 인권현장 불시시찰기능 :

· 강제철거지역 불시시찰- 공권력의 비호아래 철거깡패들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사태 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으로 복합적인 비리의 온상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강제철거감시단이 구성되어 강제철거 감시활동을 해 왔다. 함께 움 직이면면 효과적일 것이다.

· 각종 개발지역 불시시찰- 주민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되는 곳은 그나마 투쟁을 통해 작 은 목표라도 이루어 내지만 대개 많은 개발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다가 피해 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각종 공갈과 협박, 폭행등의 인권유린이 이루어 진다.

· 비닐하우스촌 시찰 - 비닐하우스촌 자체가 인권의 제외지역이다. 행정적인 서비스 즉 전 기 ,수도, 전입, 아동교육, 우편배달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 늘어난 비닐하우스 가구들에 대한 인권보호 절실

다. 인권실태조사기능 :

· 인권적 최저주거기준 시행 - 노숙자, 쪽방, 무허가촌등 주거빈곤층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 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실적인 통계를 통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인권법제정 정책연구기능 - 각종 개발법에서의 빈민층의 인권보호 연구의뢰, 현재 추진중 인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권보호 정책연구, 강제철거시 적용되는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과 국제법 적용, 주거권에 각나라의 법 연구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발지역 세입자 인권보호지침 마련, 주거기본법 내용중 강제철거 금지 , 최저주거기준법 마련, 비닐하우스촌 특별법등 제도적 개선에 따른 빈민층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인권기구 안에 각계 각층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이 담아지는 그릇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6. 공대위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

가. 인권위원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는 부분에 우려

점이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에 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정치적인 고려가 정권에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참다운 공정성이 떨어진다 보여진다.

그리고 국회에 추천이라는 것도 현 정치권의 무능력과 각당의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민생외면 상황에서 얼마나 올바로 구성될 수 있는지 우려된다. 오히려 인권특별위원회나 인권위원 구성을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대표들의 준비위원 형태의 대사회적 도덕성과 신망성.객관성이 있는 단위에서 인권위원의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이 주어졌으면 한다.

나. 구제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권한의 실효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내용이 범죄의 행위에 해당되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에서 더 나아가 수사요구지시가 되어야 한다. 인권위법은 모든 법 위에 우선적인 법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태료 제도와 범칙금제도는 인권에 유린이라는 인간파괴행위에 적합하지 않다 여겨진다. 인권을 유린하는 죄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 통례화 되고 그에 따른 엄한 법적 구속력과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120~130

▷Ⅲ분과· 5일(19:00~19:50)

군대에서의 폭력문제

현정덕*

1. 군 인권상황 개요

가. 원일중위 사건을 중심으로

1. 사고자 인적사항
- ㅇ성명 : 원 일(26세)
- ㅇ소속 : 보병 제 28사단 82연대 3대대 12중대 1소대
- ㅇ직책 : 소대장
- ㅇ계급 : 중위
- ㅇ군번 : 96-23474

1973년 서울 출생
1992년 2월 장충고등학교 졸업
1996년 2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1996년 9월 학사 28기 임관

2. 근무 및 사고일지
- ㅇ1996. 9. 28 소위 임관
- ㅇ1997. 2. 28 OBC 교육 수료

*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 ㅇ1997. 3. 3 보병82연대1대대4중대1소대 보직
- ㅇ1997. 4. 11 회식 당시 소속중대 중대장 전학봉 대위, 선임 소대장 홍영국 소위에 구타당하고 모욕감과 억울함을 사단 헌병대장에게 전화로 호소
- ㅇ1997. 5. 12 신교대 대기 발령 후 덕정병원 후송. 4일간 대기하다 신경성 노이로제라는 병명으로 진해 국군 통합병원 강제 입원시킴
- ㅇ1997. 8. 20 퇴원 후 자대 복귀
- ㅇ소속 연대에서 3개월 간 대기시킨 후, 1997년 11월경 82연대 12중대 1소대장으로 보직 발령 후, 6개월 동안 충실히 근무하다가,
- ㅇ1998. 4. 14 07:50경 소속대 BOQ에서 출근 준비 중, 기습적으로 구타를 하고 덕정병원을 경유,화곡동 국군 통합병원에 긴급 후송 후 수술을 받음.
- ㅇ당시 환자상태 : 혼수상태, 언어장애, 눈 실명 등.

3. 군 수사기관(헌병대) 주장

상기 사고자 인적사항(2번)에 대해서 크레카라는 폭발물을 입에 물고 자해(자살) 미수로 결론

4. 통합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 내용(방만혁 대위)
- ㅇ1차 치료 소견서(수사기관 제출용)화상흔적이나 기타 폭발물에 의한 흔적은 전혀 없었음
- ㅇ 2차 치료 소견서(수사기관 제출용)안면부 좌상(타박상) 흔적이 있었음

※1,2차 담당 군의관의 치료 소견서에 폭발, 화상에 의한 흔적은 전혀 없고 타박상 흔적이 있다고 하고 있음.

5. 사고자(원일 중위)의 의식 회복 후 진술
- ㅇ다소의 부대 적응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나, 성장과정, 가정환경, 부대환경에서 폭발물(크레카)에 의한 자해(자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자해(자살) 미수가 아니고 기습적인 구타를 당했음.
- ㅇ상기(2번) 근무 및 사고일지에서 언급했듯이 초급장교로서 부대조직을 잘 몰라서 구타당하고 생사람 정신병자 만들고 결국은 불구자의 신세가 되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6. 보호자 의혹 제기

통합병원 담당군의관(방만혁 대위)의 수사기관 제출용 1,2차 치료 소견서에서 화상 흔적이나 기타 폭발물에 의한 흔적은 전혀 없고, 안면부 좌상(타박상)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도 수사기관(헌병대)의 폭발물(크레카)에 의한 자해(자살) 미수로 수사한 점.

- ㅇ사고자(원일 중위)의 의식 회복 후 진술(상기내용 5번)과 부모로서 지켜본 자식의 성장과정, 학교과정, 가정환경에서 폭발물에 의한 자해(자살)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 ㅇ장교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하겠다는 의지로 군에 입대한 1년 남짓한 초급장교로 근무한 자가 불명예스럽게 폭발물(크레카)에 의해서 자해(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 ㅇ'폭발물(크레카)에 의한 자해(자살) 사고라면 사고 당시 가건물을 체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했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수사형태를 취하지 않은 점.
- ㅇ사고자(환자)가 정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혼수상태에 있을 때 장시간에 걸쳐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받은 점. 의식회복 후에 진술을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 점.
- ㅇ담당 군의관(방만혁 대위)이 일관성 있는 수사기관 제출용 1, 2차 소견서와 환자의 안과 과정에게 인계 시에도 이 환자는 폭발물 사고가 아니고 흉기에 의한 타박상으로 이야기 하여준 점.
- ㅇ사고 경위서 통보를 통합병원에서 1개월 정도 지연시킨 점.
- ㅇ사건 송치를 군 검찰관에게 자해(자살) 미수로 1차 송치했다가 반려된 점.
- ㅇ주위 사람(관련자) 다수가 다친다고 하여 혼수상태에서 진술을 강요하는 공갈 협박을 한 점.
- ㅇ사고자가 피의자로 자해(자살) 미수라고 한다면 현장 검증을 피의자 없이 보호자만 입회시키고 수사관 의도대로만 한 점.
- ㅇ사고자(환자)가 의식회복 후에 진술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음.

7. 현재의 상태

가. 얼굴성형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9월 18일 하기로 잡혀있음.

나. 군복무 중 다친 상처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현재 전역이라는 이유로 국군통합병원에서 강제퇴원 시키려 함.

다. 재 수사 요청한 결과 정신질환 문제는 군 책임을 느끼고 있다함.

나. 군 사법제도의 변화(군사법원의 독립)

1) 창군 이후 지금까지 통합 운영돼온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2000년 7월1일에서야 독립적으로 운영.

방식 : 국방부 장관-법무관리관(준장)-검찰단장(대령)
국방부 장관-군사법원장(준장)신설

2) 병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 및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논란과 대형사건, 사고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능력 미흡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에 의해 만들어짐.

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2부로 확대, 계룡대 지역에도 상설운영하며 육.해.공군 각 군 본부에도 군사법원을 독립 운영하는 한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4) 인권보장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 군사령부급에 국선 변호부를 편성.

5) 경미한 사건처리를 위한 즉결심판제도를 도입.

다. 군 조사기관인 국방부 특별조사단 및 전국군폭력희생자협의회(전군협)

1) 국방부 특별조사단

가. 탄생배경

1980년 이후부터 1999년 9. 30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중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망사고를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구

국방부 장관 - 특조단장(중장) - 각부서

다. 실태

① 접수와 조사

② 조사는 가족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나 민원인 면담이나, 진술청취 수준임

2) 전군협

가. 탄생배경

98년 2월 24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98년 12월초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타살의혹이 제기되면서 군대 내 사망의혹에 대해 관심이 고조됨. 이후 군대에 입대했다가 의혹이 남은 채 사망한 가족을 둔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군대 내 사망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군 당국의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나. 진행과정

98년 12월 7일 군대 내 의문의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 98년 7월 군당국이 본인 중과실에 의한 전기 감전사로 발표

하였으나 가족의 노력을 통해 고참에 의한 행위였음이 밝혀진 고 박현우 상병 모친)를 결성하면서 군대 내 사망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됨.

다. 활동내용 및 경과

① 2000년 8월 현재 1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② 전군협 회원중에는 사건 발생 1년에서 짧게는 반년 가까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하지 않은 채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음.

③전군협 결성후 활동 경과

- 12월 7일 전군협 결성
- 12월 9일 김훈중위 사망의혹 관련 특별합동조사단 구성
- 군대 내 의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군 수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및 사건 발생 현장 방문, 수차에 걸친 집회 개최
- 99년 4월 14일 김훈 중위 사망 관련 수사결과 최종 자살 결론 발표
- 4월 24일 공군 제 3715부대 장승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활동 전개
- 4월 29일 국방부 특조단 해체하고 이후 의문사 처리과로 전환
- 5월 12일 장승완 상병 사건 관련 전군협과 국방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군협 집행부에게 '의문사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질 것을 국방부가 제안함. 당일 오후 2:30-5:30분까지 국방부에서 진행된 간담회 도중 충주 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던 장승완 상병의 사체를 공군본부 검찰부에서 영장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유족에게 통보도 없이 원주 국군병원으로 후송.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전군협에서 강력 반발함.
- 5월 27일 전군협에서 군대 내 사망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장상병에 대한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국방부 정문앞에서 시작함.
- 6월 1일 전군협 회원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지지 집회 개최
- 6월 4일 군 의문사 해결을 위한 32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6월 5일 국방장관 면담 성사,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수사 약속.
- 국방부장관 직속의 의문사 특별조사단 구성

2. 군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 사례

가. 현행 군 수사의 문제점과 군대 내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

① 군 당국이 밝히는 사망 동기이다.

사망동기에 대해 대부분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자살'로 결론 내리는 있음.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유족의 주장은 묵살되어 버린다.

자살과 타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그 원인 밝혀질 때까지, 최소한 유족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올바로 규명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함.

② 사건 발생후 수사 착수전에 내리는 자살예단

이는 군의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하면 속전속결식의 군 수사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내무반에서 총을 들고 난사를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든지 범인을 자임하는 이가 있지 않은 이상 사인을 자살로 보고해 버리는 형태가 현재 군의 수사 방식인 것이다.

③ 초동 수사의 엉망과 사건 현장의 훼손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을 살피고 사인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서라도 포착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건 당시 입고 있는 피복과 최소한 현장이 일정기간 동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④ 유족에 대한 군 당국의 박대와 군사 기밀이라는 명분을 든 비협조

⑤ 유족의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방식 문제

군 당국 수사의 불성실한 결론에 대해 의혹을 느낀 유족이 다시금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자 청와대를 비롯해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등 각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결국 진정서는 1차 수사를 맡았던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나. 구체적인 인권피해 유형들

①군기확립이라는 이유로 묵인되는 군내 폭행

② 집단적인 따돌림(조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에 대한 집단적 횡포)

③ 사건의 조직적인 축소(지휘관 징계와 부대원의 재배치등이 사건을 내부에서 무마하는 식으로 작동)
④ 사망사고의 경우 입대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

3. 군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구제수단 및 한계.

가. 소원수리 제도
나. 헌병대 또는 부대 지휘관에 보고.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의 경우 근본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신고하기란 어렵다. 당사자의 신고는 함께 생활하는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거나 부대를 들쑤시는 조사를 통해 신고자 때문에 부대생활이 어렵게 되었다는 식으로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4. 국가인권기구의 성립 시 활용방안

가. 인권위를 통한 재수사
나. 군 부조리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방안 모색
다. 군 수사 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① 군대 내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은 군이 아닌 제 3의 중립적인 기관이 조사를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차 수사는 군 헌병대에서 할지라도 군 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2차 수사는 민간 검찰이나 민,군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이외에 국가 인권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② 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유족의 이의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③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유족이 원할 경우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부검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수사기록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군 당국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요구하면 기록을 보여주겠다고 밝힌다. 이는 잘못된 관행이며 유족이 요구하는

모든 기록은 수사중에도 공개해야 하며 수사 종결후에는 모든 기록이 당연히 공개되어 유족이 한점 의혹없이 사실을 알수 있어야 한다.

④ 군 내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 숨진 이들의 명예를 지켜 주어야 한다. 현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변사 사건은 대부분 자살로 처리된다. 그리고 유족에게 사망 직후부터 화장을 요구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법의학자들은 이유 없는 자살은 없다고 한다. 또한 만약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국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주어야 한다. 국립묘지 안장을 비롯한 군대 회생자 추모비 건립, 위령소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 수사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선진 수사 기법의 도입
⑥ 의문사 사건의 모든 수사기록의 열람 및 확인
⑦ 의혹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소환 및 조사 활동
⑧ 사건 현장에 대한 방문 및 현장 검증

5. 국가인권위의 기능

가. 개인인권침해 구제기능: 사병 또는 간부에 대한 폭력행위 신고 접수.

나. 인권현장 불시시찰기능: 군 병원, 군교도소,. 군 헌병대의 불시시찰 확보.

다. 인권실태조사기능:
군내 가혹행위 실태조사. 소원수리 결과 조사. 육군교도소 수형 실태조사(미결수용자의 삭발, 징벌소 운영(85년에 설치된 우체통 만한 징벌장소), 혁수정 사용실태, 독방수용 시설내의 감시(카메라, 도청시설). 헌병대 영창에서의 가혹행위 실태조사(매미, 목봉, 구타, 기합, 얼차려등)

라. 인권법 제정 정책연구기능 : 군내 사망사고등 강력사건 조사내용의 국제인권법 적용 연구 의뢰.군의 관행적 수사를 개선하는 방안.

마. 소송참가 및 의견제시 기능 :

바. 지침 제정기능 : 군내 가혹행위 유형 및 벌칙 제정/수형자의 권리사항.

사. 국회에 대한 법개정 권고기능 : 군 행형법의 개정.(일반 행형법과 준하도록/외부 감사기능의 첨부)

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관행 개선 권고 :

자. 인권교육기능 : 인권 교육실시.

차. 기타 인권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기능과 그 이유

① 12조 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군의 폐쇄적 속성을 극복할 재수사 근거의 명확한 확보.(출석요구 21조3항, 방문조사/면담/ 자료확보 27조5항 등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압수, 수색등 수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② (41조 8항)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관련 중앙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군 사건의 조사에서 국가기밀, 보안시설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이나 시설출입을 거부할 경우에 따른 방안(위원의 비밀취급인가등의 확보와 조사관의 비밀취급인가 확보)

③ (36조) " **【조사대상 인권침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에서 군의 구조와 체계에 비추어 진정하기 곤란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로의 진정을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진정서 접수증을 개별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 수용시설이나 군 병원에서 인권관련 진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정신병동 수용자에게도 진정방안이 있어야한다)

⑤ 군관련 진정의 경우 전역 후 제기 될 가능성이 많아 수용시설 및 군관련 사건의 경우 자유로운 조건 때부터 진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⑥ (제40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내용에 군검찰 및 헌병대 기무대를 언급 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수사선에 외압이 여전한 실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59조 " **【불이익 금지와 지원】**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신변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보복인사, 진급누락 등의 보이지 않는 조처에 대한 방안)

⑧ 현장검증, 재현과정에서 진정인, 대리인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⑨ 벌칙조항의 강화(금액등)

6. 공대위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당해 부문 활동가의 입장에서)

가. 인권위원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제5조 【인권위원의 임명】

① 인권위원 중 5인은 대통령이,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의 임명·추천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임인권위원 선정에 **인권관련단체의 복수 추천**을 받는다.(신설)

제6조 【인권위원의 자격】

①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하여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추천한다.**(굵은 글 삭제)**

②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 또는 추천하는 인권위원 중 여성을 각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각 3인의 상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권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제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권한의 실효성 방안.

①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한다. 예산문제등 특히 조사의 방법 및 조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②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수정.

다. 구제절차와 구제수단

라. 인권법 논평과 제안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인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131~146

▷ I 분과 · 6일(09:00~09:50)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이 철 호(李哲鎬)*

"미행, 감시나 도청은 사람의 피를 말리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며, 사람을 인간으로 서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이다" (월간 말, 1993년 2월호, 155면 송은씨 인터뷰기사 중에서)

<< 목 차 >>

1. 프라이버시 부문의 인권상황 개요
[과거 및 진행중인 캠페인]
[10년간 입법동향 및 제도적 발전사항]
2.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의 대표적 유형 및 사례
3. 프라이버시 침해구제수단과 그 한계
3-1.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한계
3-2.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4. 국가인권기구와 프라이버시 활용 방안
5.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
6. 맺음말

*현 덕성여대 · 서남대 강사 / 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
저서 및 논문 : 『12 · 12, 5 · 18재판과 저항권』, 『인권수첩』, 『경찰행정법』, 긴급권 남용의 실태와 문제점, 진보당(進步黨) 사건의 현대적 조명, 헌법상 사면권과 전 · 노 사면에 관한 管見 등

1. 프라이버시 부문의 인권상황 개요

헌법 제17조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Privacy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Privacy권리는 Common Law상에서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 민사상 문제로 다루어 왔으나 1890년 Warren & Brandeis의 논문이래로 독립된 권리로 다루어졌으며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었다.

초기의 프라이버기권의 개념은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the individual to be let alone)'로 정의되어 졌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콘트롤 할 개인의 권리(individual's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간단히「自己情報支配權」,「自己情報統制權」이라고도 부를수 있다.[1]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과거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 기본적인 것들이 청산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손에 의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는 고도정보화사회에서 국가권력과 민간권력에 의해 발가벗겨져 있는거나 다름없다.

현대 행정은 국민의 복지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그 복지실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정보를 수집·기록·보관하여 그것을 자료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등을 수행한다. 또, 신용정보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각 기업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담보로 거래를 행하면서 개인의 私的 情報(예를들면, 가족관계·재산관계 등)를 파악하여 기록·보관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사생활이 모두 노출된다. 그리하여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집·보관되어지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수집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목적에 사용되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기록 보관되어 국가의 행정과정에서나 기업의 신용거래에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우리 현실에서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사

1) 堀部政男,『プライバシ-と高度情報化社會』, 岩波新書(1988), 29면.

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프라이버시의 위기시대」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위험수위가 극에 달해 있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그 체계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기본조항 내지 목적조항(目的條項)으로 하고,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 등을 그 실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2]

[과거 및 진행중인 캠페인]

(1) 전자주민카드 반대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은 1996년 6월부터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인감증명서, 지문 등 모두 7개 분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지 오웰이 말한 빅 브러더(Big Brother)의 출현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어 주민등록증을 프라스틱카드로 대체하고, 전자주민카드는 폐기되었다.

전자주민카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관계법률에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시행된 경우 전자감시시대의 도래와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독점하여 공안당국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들춰보아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악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리자가 실수할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다.

(2) 주민등록증 날인 거부 캠페인[3]

주민등록증 날인거부 운동은 주민등록과 지문날인 제도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문날인 거부의 가장 핵심인 이유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것과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1999년 4월 26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폐지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동년 7월 1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51인이 1차로 거부 선언을 하였다.

2)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1997), 399면.

3)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과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문날인 거부 222+모임이 발간한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2000년 7월 발간)책자와 http://fprint.jinbo.net참조 할 것.

동년 7월 19일에 2차 거부선언이 있었고, 동년 9월 1일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4]

2000년 5월 30일 지문날인 거부자 2차모임인 「지문날인 거부 78+」가 발족하여 현실에서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캠페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년 7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2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5]

시민단체들에 의해 가칭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우는 법률개정안이 기존의 법률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점을 인정하지만,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이를 명분 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부의 법률개정안 철회 운동을 펼치며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라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0년간 입법동향 및 제도적 발전사항]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2)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1948년 제정·공포된 임시우편단속법(臨時郵便團束法)[6]의

4)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원문은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19-gjkim4.htm참조.

5) http://www.privacy.or.kr/2000-07-20-sms.htm

6)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 등이 임시우편물단속법에 의 검열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기부 우편검열의 본산 우정연구소", 월간 「말」, 1992년 12월호, 146~149면; 동아일보, 1991년 11월 8일, 17면·18면 참조할 것.

대체입법으로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어 199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되었고,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참조).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법률 제5242호로 1996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류·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의 대표적 유형 및 사례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으로는 입법기관의 위헌적인 법률의 제정,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가택침입·도청·촬영 등, 사법기관의 판결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 사인(私人)·각종 사설기관 등에 의해서도 침해된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은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2) 私人(민간부문)에 의한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대표적인 침해유형

국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대표적인 침해유형으로는 민간인 사찰과 도청·불법적인 계좌추적 등을 들 수 있다.

가. 민간인 사찰 문제

국민(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미행은 사찰이나 미행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자료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축적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데에 그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7]

민간인 사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작성한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 기록인 블랙리스트가 윤석양 이병에 의해 폭로된 사건을 들 수 있다.[8]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상·양심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군기관에 의한 정치 경찰행위로서 불법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이름까지 바꾸었으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에서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공인되었다.[9]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국군보안사는 더이상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지만, 1997년 6월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하여 사찰한 것으로, 기무사의 대외비로 분류된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정보수집 동향'의 문건이 유출되어 공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장교 28명과 사병 185명 등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정보수집을 위해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경찰청과 사전의 논의없이 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군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증거로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10]

민간인 사찰은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경찰이 운동권출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의혹이 일간지와 월간지에 의해 드러났다.[11] 이는 국민의 정부의 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7) 감시체계와 개인정보 축적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홍석만·이준구,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 논문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98), 32~46면 참조.

8)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 「말」, 1990년 11월호 별책부록 「보안사 민간사찰 개인별 기록카드」 참조.

9)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1999), 147면.

10)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도서출판 한울(1998), 91면.

나. 도청(감청)의 문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거나 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도청(盜聽)이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해독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전화선에 의한 도청이건 전자장치에 의한 도청이건 모두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의 자유의 침해가 되기도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그리고, 불법검열이나·불법녹음에 의하여 지득(知得)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4조). 그러나, 예외적으로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i) 전기통신 등이 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ii)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iii)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iv) 감청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하고, v) 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 한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허가서에는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을 기재하며,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하에 통신제한

11) 국민일보, 2000년 7월 4일, 1면 참조; "경찰, 운동권출신 575명 불법사찰 의혹", 월간 「말」, 2000년 8월호, 92~97면 참조.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버리는 현실이 나타난다는데 있다.[12]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경찰이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임의로 긴급 감청을 실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청을 해 온 것이 밝혀졌다(동아일보, 2000년 5월 13일, 1면 참조).

<표 1> 연도별 감청집행 현황

	1997년	1998년	1999년
일반감청	4,673	5,153(10.3%)	3,064(▽40.5%)
긴급감청	486	748(54.0%)	170(▽77.3%)
계	5,159	5,901(14.4%)	3,234(▽45.2%)

* 자료 : 동아일보, 2000년 5월 13일, 1면 인용.

<표 2> 기관별 감청집행 현황

(단위 : 건)	1997년	1998년	1999년
검 찰	828	1,154	435
경 찰	3,306	3,521	1,719
국가정보원	773	795	828
군수사기관	158	358	179
관세청 등	94	73	73

* 자료 : 동아일보, 2000년 5월 13일, 1면 인용.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불법적인 도청을 넘어서 국민 개인의 PC통신과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이 메일(E-Mail) 정보까지 검열하여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업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원 영장의 공식문서에 의하여야 하지만 국가정보원·검찰 등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명이나 수사목적 등을 밝히지

1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2000), 374면.

않은 채 '간이 협조공문'이나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캐내고 있다.[13]

이러한 문제는 관계법률 다시 말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PC통신 인터넷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 3> 수사기관에 의한 4대PC통신별 정보제공 및 ID도청(감청)현황

업 체	1998년 상반기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천 리 안	267(25)	236(20)	273(36)
하 이 텔	97(2)	69(2)	131(8)
유 니 텔	14(0)	17(0)	40(1)
나우누리	125(4)	81(14)	118(41)
계	503(31)	403(36)	562(86)

* ( )안은 ID감청건수
* 자료 : 동아일보, 1999년 9월 9일, 1면 인용.

다. 불법적인 '계좌추적(금융거래정보 요청)' 문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는 계좌추적 요청시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내용을 명시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1998년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총 98,925건으로 1997년 67,719건에 비해 46%가 증가 했으며, 특히,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85,348건으로 1997년의 61,029건에 비해 40%나 증가했다고 한다.[14] 법원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은 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불법적인 계좌추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차원에서도 개인지갑을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감시사회인 '유리공화국'이 아니고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을 중시하는 체제이다. 계좌추적권을 이기관 저기관에 마구 주면서 통제장치마저 두지 않는다면 권력 속성상 남용되지 않을 수 없다.[15]

라. 국가기간전산망에서 개인정보 관리·통제상의 문제

해킹에 의한 자료 파괴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16] 최초 정보 입력 후 시간

13) 동아일보, 1999년 9월 9일, 1면 참조.
14) 동아일보, 1999년 3월 25일, A23면 참조.
15) 동아일보, 1999년 3월 26일, A5면 사설 참조.
16) 산드라 블록이 주연인 네트(The Net)라는 영화는 고도정보화사회에서 해킹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악의적인 정보의 입력으로 인하여 범인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The Net는 1996년 미국 콜롬비아 트리스타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어윈 윙클러가 감독(Irwin Winkler)이다).

의 경과로 수정정보가 입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보관리와 통제의 허술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경우,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윤리의식의 미약, 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17]

특히, 공안전산망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이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로서 정보기관에 의한 '신원조회'를 들수 있다. 이 문제는 현행 법제하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안전산망은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무기한, 무제한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한 통제가 없는 공안전산망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18]

(2) 민간부문(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대표적인 침해유형

'인터넷 혁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은 아주 강하다. 미국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의 주소를 알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체에 39달러만 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번호를 아는데는 52달러,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59달러, 현재 의 직업을 아는데는 149달러, 은행잔고를 알아 내는 데는 249달러만 있으면 하루 이틀사이에 알 수 있다고 한다.[19]

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소홀·유출 문제

① 카드회사 직원이 포함된 신용카드 위조사기범 조직이 신용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위조카드를 만들어 해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례,[20]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② 감·도청이라든지, 인터넷과 같은

17) 고영삼, 앞의 책, 151면.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윤리의식의 미약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일명 '흥신소'라 불리우는 심부름센터와 경찰·전화국 등 공공기관의 일부 직원 사이에 개인 정보를 팔고사는 '뒷거래'를 들 수 있다. 심부름센터는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뿐만 아니라 011, 019 등 5개 이동전화도 전화번호를 통해 가입자의 주소와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 2000년 2월 15일, 15면 참조).

18) 홍석만·이준구, 앞의 논문, 61면.

19) 문화일보, 2000년 5월 12일, 8면.

20) 중앙일보, 1997년 11월 14일, 23면.

통신매체에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③ 민간조직의 전산담당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민간조직의 직원·회원명단 유출, 서비스업체의 회원카드 자료의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나. 작업장의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작업장에서의 노동행위 감시의 사례는, 크게 (1) 전자카드 및 배지를 이용한 출퇴근 감시와 작업장의 작업행위 감시·휴게실에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제조물품 작업장의 감시」와 (2) 서비스 매장의 감시·고객 휴게실의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서비스 작업장의 감시」를 들 수 있다.[21]

국내 작업장에서 전자감시와 관련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출근부와 식당 이용 기록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1998년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에 RF(Radio Frequency)카드식 신분증 도입에 대해서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을 들 수 있다.[22]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민간경비시스템에 의한 교수들의 출·퇴근 통제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5·16쿠데타 이전에는 출강표만 존재하였으나,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출강표'에 더하여 '일일출근부'를 작성하여 도장 날인을 하도록 하여 교원들을 통제·감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병영(兵營)관리기법을 악용한 사례로 보여진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E-mail검색도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 27군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약관의 제시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23]

위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지침)을 제정하고 공개한 곳은 51.9%이며 그나마도 그 내용은 부실하며, 평균 11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6.7개는 필수사항이지만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또한, 가입해지(解止)시 개인정보를 파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곳이 74.1%에 달하며,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가 아주 열악한 실태인 것으로

21) 작업장의 전자감시와 노동통제의 자세한 내용은 고영삼, 앞의 책, 179~202면 참조.

22)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주간조선」 제1573호(1999년 10월 14일), 21면 참조.

23) http://www.privacy.or.kr/news0406.htm

드러났다.

3. 프라이버시 침해구제수단과 그 한계

3-1.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한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는 없다.

(1)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계

프라이버시권은 표현의 자유와 가장 충돌하기 쉽다. 즉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 자유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지 이에 대한 해결기준으로 양법익충돌의 조화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인물의 이론 등이 있다.

(2) 프라이버시권과 범죄수사와의 관계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 · 도청 · 사진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 제17조와 관련하여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범죄수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므로, 그 발동에 있어 엄격한 법률의 요건을 지켜야 할 것이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3) 프라이버시권과 국정조사 · 감사권과의 관계

국회는 국정감사 · 조사권을 발동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4) 프라이버시권과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명단공표와의 관계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성명 ·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명단공표(名單公表)는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명단공표를 규정한 법률은 없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

리규정」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는 공표의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4]

3-2.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 국가공권력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한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헌심사, 헌법소원(憲法訴願), 청원, 손해배상, 관계공무원의 징계, 상소나 재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특히,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가택침입 · 도청 · 감시 · 촬영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 · 불법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잇으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25]

(2) 사인의 침해에 대하여는 원인배제청구, 민사상의 손해배상(위자료)청구, 형사처벌요구, 정정보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나 방송법 제41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반론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국가인권기구와 프라이버시 활용 방안

(1) 수사 · 정보(공안)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청실태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를 인권위에 보고 · 제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하지만, 침해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국가인권기구를 이용한 권리구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2) 형사절차나 행정절차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 침해 당사자가 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자료 요청 및 조사중지요

24) 권영성, 앞의 책, 410면.
25) 권영성, 앞의 책, 411면.